

전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6가합451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장정길

피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변론 종결2018. 12. 6.

판결 선고2019.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262,9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증부 대출

1) 원고는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2009. 3. 13.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과 사이에 "기운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09. 9. 14.(이후 2016. 9. 5.로 연장)"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B에게 위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국내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의미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위 3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라 보증번호 C, 보증원금 225,000,000원(부분 보증비율 75%), 보증기한 2009. 9. 14.(이후 2016. 9. 5.로 연장)로 정하여 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나. 추가 대출절차

1) 이 사건 보증부 대출 이후, 원고는 (주)B에게 2010. 4. 8. 3억 원, 2011. 9. 30.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10. 14.경 (주)B로부터 위 대출채권 합계 4억 5천만 원에 관하여 변제를 받았는데, 위 변제금의 출처는 (주)B가 자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을 유한회사 E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였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촉구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책통지'를 하였다.

본건 이행청구 관련 보증부대출은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에 의한 보증부대출입니다.

"Fast-Track 프로그램" 특별보증 특약에 의거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금은 당해 보증부대출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아래' 참조)에 우선변제됨에 따라 청구금액 전액 감액하여 이행코자 합니다.

2010. 04. 08.	F	300백만원
2011. 09. 30.	G	150백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른 보증 하에 (주)B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주)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주)B에 대하여 합계 134,262,943원(= 대출원금 68,367,540원 + 이자 65,895,403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134,262,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것인데, 원고는 (주)B로부터 받은 변제금을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증부 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에 우선 변제충당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및 보증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이 사건 보증부 대출의 변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주)B의 대출금 전액변제사실을 주장하자,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주)B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합계 134,262,943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13. (주)B에게 대출한 '이 사건 보증부 대출채무' 3억 원은 2017. 8. 28. 기준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주)B는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여 오다가, 2016. 12. 20. 대출원금 75,000,000원, 2017. 3. 28. 대출원금 110,705,767원, 2017. 8. 28. 대출원금 114,292,770원을 각 상환함으로써, 대출원리금 모두를 변제하였다(을 제12호증, 5쪽 참조)).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갑 제4호증을 들어 원고가 (주)B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B에게 가진 특수채권이 2018. 12. 5. 기준 대출원금 68,367,540원에 이자 65,895,403원을 합한 134,262,943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특수채권이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주)B에게 가진 특수채권 134,262,943원이 이 사건 보증부 대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김소연

판사송한도